

투자위험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흥국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을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매우 낮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투자신탁 4 호[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투자신탁 4 호[채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흥국자산운용(주)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http://www.hk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21년 09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년 10월 2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작)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흥국자산운용(주) 본점(☎ 02-2122-2800, [www.hkfund.co.kr](http://www.hkfund.co.kr))

각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AP5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	BT5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BT5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CZ4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고액(C-i)	D0711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 상세목차

## 제 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 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 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사항

## 제 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1.09.30)

###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펀드코드: AP577)

투자위험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흥국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 및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른 이자율변동위험, 신용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 및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이상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4호[채권]'에 90% 이상을 투자하여 적정 펀드 듀레이션에 의한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 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	없음	0.3225	0.2000	0.3700	0.3250	33	68	105	18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e)	없음	0.2225	0.1000	0.2600	0.2250	23	48	73	128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가 <b>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 · 비용포함))</b> 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5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2020/09/30 ~ 2021/09/29		2019/09/30 ~ 2021/09/29		2018/09/30 ~ 2021/09/29		2016/09/30 ~ 2021/09/29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단위: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	2014.09.30	1.41	1.57		2.12		2.08		2.25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e)	2017.08.02	1.51	1.67		2.22		-		2.25										
	비교지수	-	0.59	1.36		1.81		1.80		1.93										
	수익률 변동성	2014.09.30	0.43	0.49		0.47		0.54		0.52										
	주1) 비교지수: (1 * [KIS중단기지수 1-2Y])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채권형, 단위:%)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운용경력 년수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형태	1972	책임(본부장)	50개	115,433억	0.69	1.64	0.48	1.51	20년8개월			
	조정남	1975	부책임(팀장)			1.74	1.90			18년3개월			
<p>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p> <p>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을 금융 투자협회 홈페이지(<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b>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li> <li>·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li>·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 비하여 이자율 변동시 가격변동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u>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u>											
	집합투자 기구	수익자 전원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서											

	해지의 위험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li> <li>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li> </ul>		환매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D+2)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li> <li>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li> </ul>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table border="1"> <tr> <td>산정방법</td><td col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li> <li>-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li> </ul> </td></tr> <tr> <td>공시장소</td><td colspan="3">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a href="http://www.hkfund.co.kr">www.hkfund.co.kr</a>)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li> <li>-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li> </ul>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hkfund.co.kr">www.hkfund.co.kr</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에 게시합니다.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li> <li>-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li> </ul>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hkfund.co.kr">www.hkfund.co.kr</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에 게시합니다.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세액공제 (2015.1.1 부터)</td><td>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li> <li>-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li> </ul>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td></tr> <tr> <td>과세이연</td><td>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td></tr> <tr> <td>과세체계 다양성</td><td>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td></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2015.1.1 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li> <li>-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li> </ul>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2015.1.1 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li> <li>-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li> </ul>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홍국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2122-2800 /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www.hkfund.co.kr">www.hkfund.co.kr</a>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1년 10월 29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hkfund.co.kr">www.hkfund.co.kr</a> )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7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head> <tbody> <tr> <td>판매 수수료미징구 (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판매 경로 (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입니다. 다만, 판매회</td></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											
	해지의 위험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li> <li>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li> </ul>		환매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3영업일(D+2)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li> <li>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li> </ul>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table border="1"> <tr> <td>산정방법</td><td colspan="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li> <li>-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li> </ul> </td></tr> <tr> <td>공시장소</td><td colspan="3">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a href="http://www.hkfund.co.kr">www.hkfund.co.kr</a>)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에 게시합니다.</td></tr> </table>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li> <li>-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li> </ul>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hkfund.co.kr">www.hkfund.co.kr</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에 게시합니다.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li> <li>-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li> </ul>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hkfund.co.kr">www.hkfund.co.kr</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에 게시합니다.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head> <tbody> <tr> <td>세액공제 (2015.1.1 부터)</td><td>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li> <li>-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li> </ul>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td></tr> <tr> <td>과세이연</td><td>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td></tr> <tr> <td>과세체계 다양성</td><td>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td></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2015.1.1 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li> <li>-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li> </ul>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2015.1.1 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부담금은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5%</li> <li>-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300만원 이내 금액과 합산하여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12%</li> </ul>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홍국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2122-2800 /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www.hkfund.co.kr">www.hkfund.co.kr</a>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1년 10월 29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hkfund.co.kr">www.hkfund.co.kr</a> )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7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head> <tbody> <tr> <td>판매 수수료미징구 (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 <td>판매 경로 (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입니다. 다만, 판매회</td></tr> </tbody> </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											

		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b>오프라인</b>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b>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b>온라인 슈퍼 (S)</b>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b>기타</b>	<b>퇴직연금 (C), (PR)</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고액 (I)</b>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hkfund.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kfund.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kfund.co.kr)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AP5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	BT5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BT5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CZ4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고액(C-i)	D0711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형)
-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마. 특수형태 :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

- 주1)모집(판매)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 주2)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3)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 (2)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 · 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http://www.hkfund.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AP5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	BT5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BT5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CZ4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고액(C-i)	D0711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변경 사항
2014.03.09	집합투자기구 효력발생일
2015.07.01	- BM변경 - 자본시장법 개정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사항 반영
2015.11.27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11.10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및 법 개정사항 반영
2017.04.20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에 따른 정정 - 종류형 변경(클래스 추가)
2017.07.25	-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보수 인하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17.09.14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7.10.26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2018.11.09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2019.07.05	- 투자대기자금 운용방법 추가(환매조건부 매수) -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2019.09.16	- 한글클래스명칭 병기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2019.10.17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9.12.13	클래스 신설(S-pr) 등
2020.01.17	클래스 신설(C-i)
2020.10.30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2021.04.22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신한아이티스→하나펀드서비스) -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2021.10.29	- 투자위험등급 변경(5등급→6등급) -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 법 개정사항 반영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흥국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19 층 (대표전화 : 02-2122-28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2021.09.30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연평균수익률 (채권형, 단위:%)				운용경력년수 및 이력	
			집합투 자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형태	1972	책임 (본부장)			0.69	1.64			* 운용경력 : 20년 8개월 - 01.01~13.12 : 동부화재해상보험 일반계정운용1부 - 13.12~현재 : 흥국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조정남	1975	부책임 (팀장)	50개	115,433억	1.74	1.90	0.48	1.51	* 운용경력 : 18년 3개월 - 98.11~05.06 : 한국투자증권 리테일채권부 - 05.06~11.06 : 한국투자신탁운용 Fixed Income 운용본부 - 11.07~17.06 : 삼성화재해상보험 일반계정운용파트 - 17.08~현재 : 흥국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용전문인력입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이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상기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1,765억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이며, '이력'은

운용전문인력의 과거 10년간 주요 이력입니다.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2017.04.20. 채권운용본부 성일환(1969) 책임운용전문인력 말소
- 2017.04.20. 채권운용본부 박형태(1972) 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③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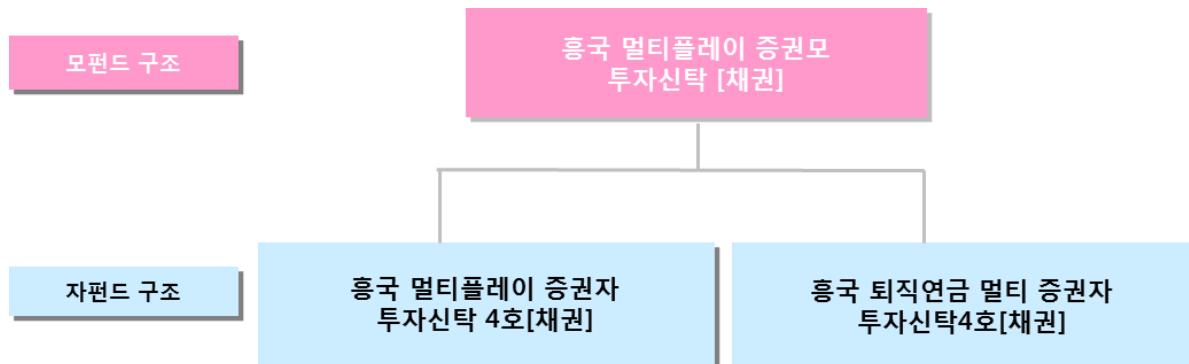
- 2017.04.20. 채권운용본부 이규봉(1986)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 2017.09.14. 채권운용본부 이규봉(1986)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말소
- 2017.09.14. 채권운용본부 조정남(1975)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신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채권] : 흥국 퇴직연금 멀티 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의 운용전문인력과 같음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온라인 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

	<u>(S)</u>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u>퇴직연금 (C), (PR)</u>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u>고액 (I)</u>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기타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모자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및 당해 모투자신탁 내의 다른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채권]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90%이상
흥국멀티플레이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90%이상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 [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60%이상 투자
	투자목적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
	비교지수	KIS중단기지수 100%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에의 투자는 국공채, 통안채, 금융채, 회사채(신용평가등급 A- 이상) 등에 투자</li> <li>- 이 투자신탁은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사전 인식 및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li> </ul>

※ 상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는 2013년 4월 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으며 2013년 4월 15일 설정되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등 관련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kfund.co.kr](http://www.hkfund.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 비교지수: KIS중단기지수 100%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 이상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3) 유동성자산	10% 이하	<input type="checkbox"/>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 <input type="checkbox"/>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를 위한 모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 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 ④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채 권	60% 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A-</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다만, 신용평가등급이 취득시 <b>A2-</b> 이상이어야 한다)
어 음 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A2-</b>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 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집합투자증권등	5% 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 9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환매조건부증권매도	50% 이하	보유증권총액 50%이내 매도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대여
증권의 차입	20% 이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 어음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 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채권, 주식, 어음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의 대여 및 증권의 차입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② 투자신탁 일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⑤ 그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채권, 어음 등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규약 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에 따른 단기 대출</li> <li>-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li> </ul>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 분	내 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p>-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동일종목 투자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 예금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li> <li>-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 · 매매 · 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li> </ul>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li>-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li> </ul>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동일종목의 투자 및 파생상품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 ② 투자신탁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주 1)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을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투자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 및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이상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 투자하여, 적정 펀드 드레이션에 의한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외부신용평가기관 자료, 각종 재무자료, 업종분석 등을 바탕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상세한 신용분석을 수행하여 투자종목을 결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사전인식 및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외화자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교지수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hkfund.co.kr](http://www.hk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비교지수: KIS 중단기지수 100%

※ KIS 중단기지수는 만기 1년~2년 구간의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레이션이 1.5년 수준입니다.

※ 비교지수 선정사유 : KIS 중단기지수는 듀레이션 1.5년 수준의 국내 회사채 시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1년 ~ 2년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이 집합투자기구와의 비교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 비교지수 관련 내용은 KIS 채권평가 홈페이지(<http://www.bond.c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위험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사전인식 및 평가하여 운용전략위원회와 리스크관리실무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및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90%이상을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자투자신탁(채권)으로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 위험	관련법령은 수익증권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 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위탁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에 비하여 이자율 변동시 가격변동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신용 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의 범위는 무한대로 이 투자신탁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지렛대효과(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R E P O 매도 및 운용 위험	이 투자신탁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채권 등을 매입하게 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 및 금리 불일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지는 경우 이와같은 투자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 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신탁의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또는 오퍼레이션 오류 및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도자산등의 평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로인해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 위험	환매금지형 투자신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초기 설정규모가 적정규모에 미달하거나 환매 등으로 인하여 설정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해 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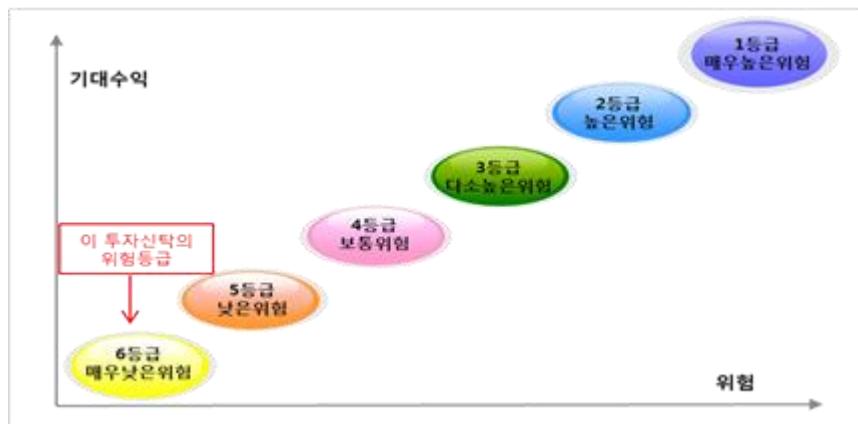
수익자 전원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집합 투자신탁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서 설정한 후기 구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해지의 위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써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 0.47%이므로 6등급 중 **매우낮은위험(6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낮은 수준의 위험등급인 경우에도 시장이자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신용등급 하락 시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낮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공채 펀드나 정기예금보다 추가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위험등급 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2016.7.2	4등급	5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위험등급 분류체계를 5단계에서 6단계로 개편</li> <li>▶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li> </ul>
2021.10.29	5등급	6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결산일 기준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 변경</li> </ul>

#### 최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매우높은위험	높은위험	다소높은위험	보통위험	낮은위험	매우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	-------	-------	-------	-------	------	--------

####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의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합니다.

### 11. 매입, 판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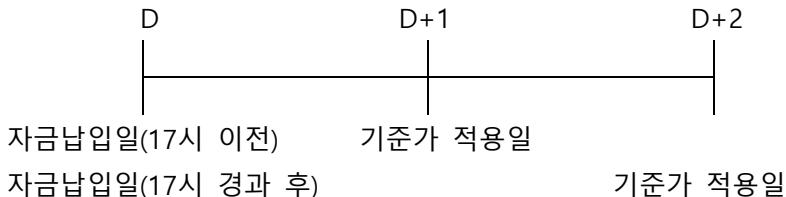
##### 2)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구분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S-pr)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고액(C-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중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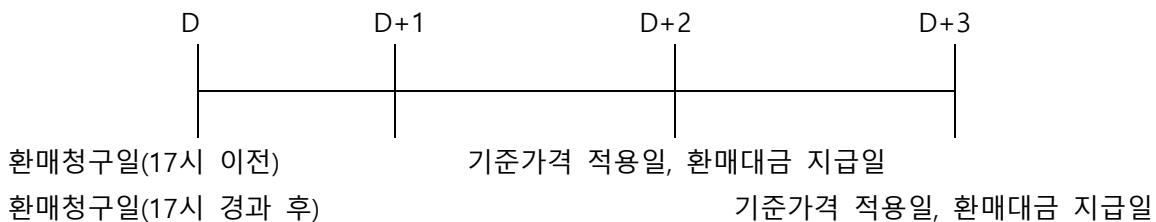
###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환매대금 지급

(나)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가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 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5)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 시[오후 5 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기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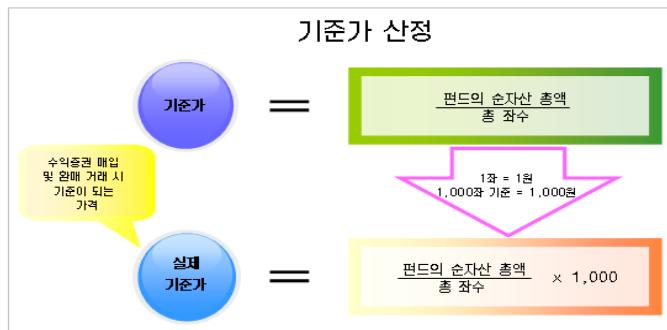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주요 내용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해 매일 공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hkfund.co.kr">www.hkfund.co.kr</a> )·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 홈페이지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의 최종시가)
국내상장주식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다만, 평가기준일의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의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등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및 기타채무증권 등	비상장채권(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제 10 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기업어음 및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 비상장채무증권과 유사한 증권 등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등

구분	주요내용
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장 : 대표이사</li> <li>위원 : 운용업무 담당 임원 및 해당 운용본부장,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평가업무 담당 임원 및 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한 자</li> </ol>
업무	<p>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li> <li>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li>부동재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출자전환 주식 등 시장 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li> <li>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기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li> <li>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li> <li>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li> <li>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의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주기적 공정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li> <li>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li> </ol>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

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 류	가 입 자 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	-	-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	-	-
<u>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S-pr)</u>	<u>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u>	-	-	-	-
<u>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고액 (C-i)</u>	<u>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사용자 및 가입자 중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u>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연, %)

구분	지급비율(또는 지급금액)									
	집합 투자 업자 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업자 보수	일반 사무 관리 보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 총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	0.0945	0.2000	0.0150	0.0130	0.3225	0.3700	0.0025	0.3250	0.3323	0.002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e)	0.0945	0.1000	0.0150	0.0130	0.2225	0.2600	0.0025	0.2250	0.2324	0.0023
<u>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S-pr)</u>	0.0945	0.0900	0.0150	0.0130	0.2125	-	0.0013	0.2138	0.2212	0.0024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고액(C-i)	0.0945	0.0800	0.0150	0.0130	0.2025	-	0.0025	0.2050	0.2124	0.0021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3)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4) 합성 총보수 · 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클래스펀드)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클래스펀드)이 통합펀드(실제 운용 되는 펀드)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통합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클래스(종류)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32	67	102	180	40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33	68	105	184	418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22	46	71	124	283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23	48	73	128	292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S-pr)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21	44	67	118	269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22	45	70	122	278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고액(C-i)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 · 비용	20	42	65	113	25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 · 비용	21	44	67	117	267

-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 · 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5)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나. 과세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1)$$

주1) 환급비율:(과세대상소득금액/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1 이면 1, 환급비율<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2015.1.1 부터)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7 기( 2020.09.30 - 2021.09.29 )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 6 기( 2019.09.30 - 2020.09.29 )	삼화회계법인	적정
제 5 기( 2018.09.30 - 2019.09.29 )	삼화회계법인	적정

#### 가. 요약재무제표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 4 호[채권]

[단위 : 원]

항 목	제7기 2021.09.29	제6기 2020.09.29	제5기 2019.09.29
운용자산	114,465,593,482	88,428,365,126	97,843,794,037
유가증권	112,178,054,594	88,428,365,126	97,843,794,037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287,538,888	0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844,252	0	0
자산총계	114,466,437,734	88,428,365,126	97,843,794,03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954,894,703	1,784,855,015	3,366,877,470
부채총계	1,954,894,703	1,784,855,015	3,366,877,470
원본	112,511,543,031	86,643,510,111	94,476,916,567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0	0	0
자본총계	112,511,543,031	86,643,510,111	94,476,916,567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 4 호[채권]

[단위 : 원, %]

항 목	제7기 2021.09.29	제6기 2020.09.29	제5기 2019.09.29
운용수익	1,632,493,713	2,112,218,646	2,890,374,093
이자수익	2,070,094	0	0
배당수익	1,290,017,455	533,806,935	1,376,105,407
매매평가차손익	340,406,164	1,578,411,711	1,514,268,686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770,000	0	0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770,000	0	0
당기순이익	1,631,723,713	2,112,218,646	2,890,374,093
매매회전율	0.00	0.00	0.00

※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 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항 목	재무상태표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2021.09.29	2020.09.29	2019.09.29
운용자산	114,465,593,482	88,428,365,126	97,843,794,037
현금및예치금	2,287,538,888	0	0
현금및현금성자산	2,287,538,888	0	0
유가증권	112,178,054,594	88,428,365,126	97,843,794,037
수익증권	112,178,054,594	88,428,365,126	97,843,794,037
기타자산	844,252	0	0
미수이자	844,252	0	0
자 산 총 계	114,466,437,734	88,428,365,126	97,843,794,037
기타부채	1,954,894,703	1,784,855,015	3,366,877,470
수수료미지급금	770,000	0	0
미지급이익분배금	1,954,124,703	1,784,855,015	3,366,877,470
부 채 총 계	1,954,894,703	1,784,855,015	3,366,877,470
원 본	112,511,543,031	86,643,510,111	94,476,916,567
자 본 총 계	112,511,543,031	86,643,510,111	94,476,916,567
부채 및 자본 총계	114,466,437,734	88,428,365,126	97,843,794,037
총좌수	112,511,543,031	86,643,510,111	94,476,916,567
기준가격	1000.00	1000.00	1000.00

####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7 기		제 6 기	
	2020.09.30 ~ 2021.09.29	2019.09.30 ~ 2020.09.29	2018.09.30 ~ 2019.09.29	
운용수익(운용손실)	1,632,493,713	2,112,218,646	2,890,374,093	
투자수익	1,292,087,549	533,806,935	1,376,105,407	
이자수익	2,070,094	0	0	
배당금수익	1,290,017,455	533,806,935	1,376,105,407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40,915,542	1,578,471,015	1,514,360,535	
지분증권매매차익	196,702,912	736,039,165	417,399,569	
지분증권평가차익	0	842,431,850	1,096,960,966	
채무증권평가차익	144,212,630	0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509,378	59,304	91,849	
지분증권매매차손	509,378	59,304	91,849	
운용비용	770,000	0	0	
기타운용비용	770,000	0	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1,631,723,713	2,112,218,646	2,890,374,093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15.88	21.94	34.18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 4 호[채권]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9/30~2019/09/29	111,964	111,964	65,902	67,202	83,390	84,213	94,477	97,844
2019/09/30~2020/09/29	94,477	94,477	95,063	95,953	102,896	104,114	86,644	88,428
2020/09/30~2021/09/29	86,644	86,644	76,181	77,163	50,313	50,973	112,512	114,466

(주 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 4 호[채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9/30~2019/09/29	108,039	108,039	41,042	41,869	72,024	72,562	79,787	82,363
2019/09/30~2020/09/29	79,787	79,787	44,068	44,356	83,173	84,074	43,258	44,006
2020/09/30~2021/09/29	43,258	43,258	18,624	18,859	21,333	21,577	41,298	41,879

(주 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 4 호[채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e)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9/30~2019/09/29	4,198	4,198	18,916	19,291	8,311	8,522	14,913	15,410
2019/09/30~2020/09/29	14,913	14,913	15,174	15,308	16,444	16,591	14,140	14,399
2020/09/30~2021/09/29	14,140	14,140	45,692	46,222	25,036	25,351	35,055	35,584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 4 호[채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r)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1/30~2020/09/29	0	0	166	167	69	69	98	99
2020/09/30~2021/09/29	98	98	383	388	253	257	229	232

(주 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 4 호[채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C-i)

[단위:백만좌,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06/22~2020/09/29	9,097	9,098	29,664	29,682	0	0	29,664	29,868
2020/09/30~2021/09/29	29,664	29,664	8,579	8,699	2,300	2,321	36,147	36,699

(주 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0/09/30 ~ 2021/09/29	2019/09/30 ~ 2021/09/29	2018/09/30 ~ 2021/09/29	2016/09/30 ~ 2021/09/29	2014/09/30 ~ 2021/09/29
흥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4호 [채권]	1.74	1.90	2.45	2.36	2.45
비교지수	0.59	1.36	1.81	1.80	1.93
수익률변동성	0.43	0.49	0.47	0.54	0.5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1.41	1.57	2.12	2.08	2.25

-퇴직연금(C)					
비교지수	0.59	1.36	1.81	1.80	1.93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1.51	1.67	2.22	-	2.25
-퇴직연금(C-e)					
비교지수	0.59	1.36	1.81	-	1.85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1.52	-	-	-	1.59
-퇴직연금(S-pr)					
비교지수	0.59	-	-	-	1.3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1.53	-	-	-	1.74
-퇴직연금,고액(C-i)					
비교지수	0.59	-	-	-	0.78

주 1) 비교지수 : (1 \* [KIS 중단기지수 1-2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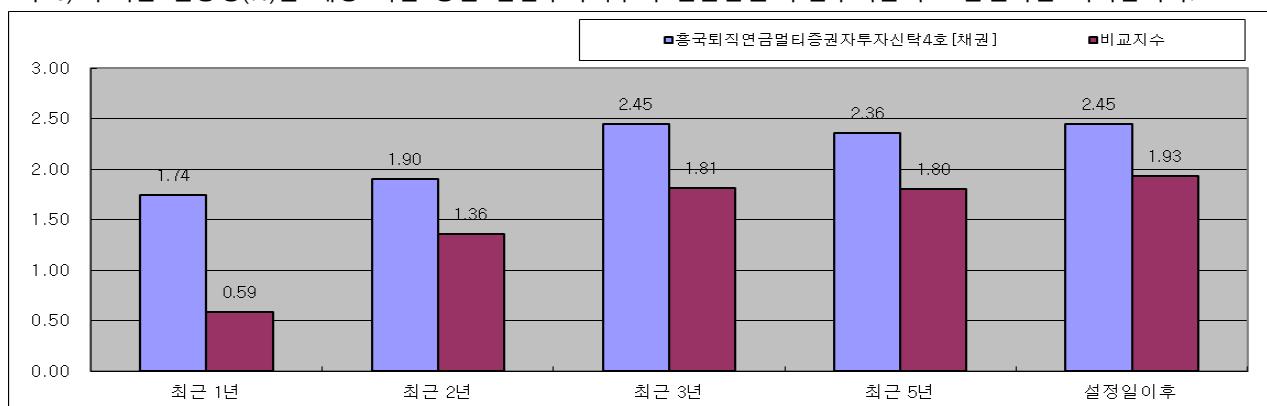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일 이후 기간은 최초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그이후 설정된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기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 5)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주 6)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20/09/30 ~ 2021/09/29	2019/09/30 ~ 2020/09/29	2018/09/30 ~ 2019/09/29	2017/09/30 ~ 2018/09/29	2016/09/30 ~ 2017/09/29
홍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4호 [채권]	1.74	2.06	3.56	2.86	1.60
비교지수	0.59	2.14	2.71	2.22	1.35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1.41	1.73	3.23	2.53	1.54
-퇴직연금(C)					
비교지수	0.59	2.14	2.71	2.22	1.35
수수료미징구	1.51	1.83	3.33	2.63	-

-온라인						
-퇴직연금(C-e)						
비교지수	0.59	2.14	2.71	2.22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1.52	1.70	-	-	-	
-퇴직연금(S-pr)						
비교지수	0.59	2.35	-	-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1.53	-	-	-	-	
-퇴직연금,고액(C-i)						
비교지수	0.59	-	-	-	-	

주 1) 비교지수 :  $(1 * [KIS 중단기지수 1-2Y])$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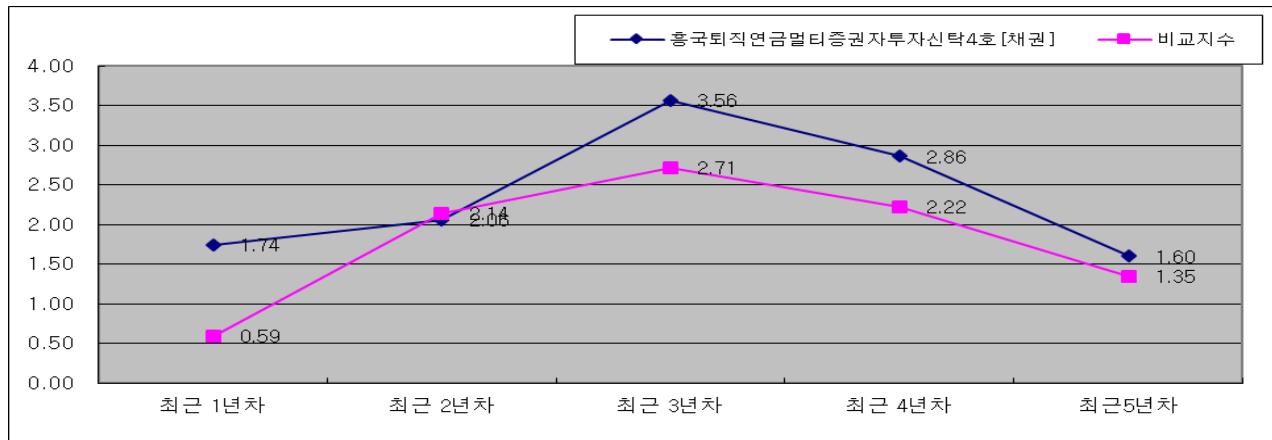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홍국퇴직연금멀티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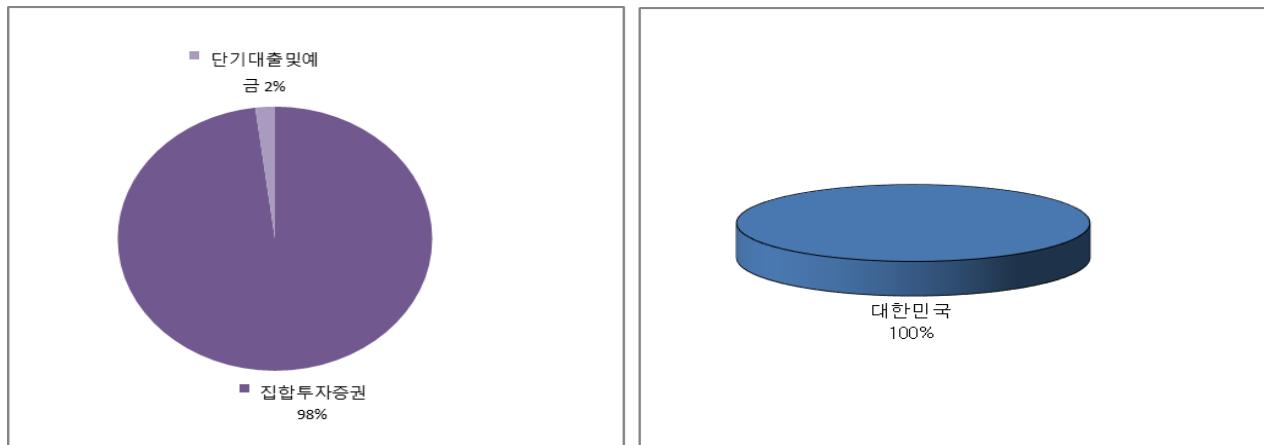
[ 2021.09.29 현재 / 단위 : 백만원,% ]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등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대한 민국	0	0	0	112,17 8	0	0	0	0	0	2,288	0	114,466
	(0.00)	(0.00)	(0.00)	(98.00)	(0.0 0)	(0.0 0)	(0.00)	(0.00)	(0.0 0)	(2.00)	(0.00)	(100.00)
합계	0	0	0	112,17	0	0	0	0	0	2,288	0	114,466

				8								
	(0.00)	(0.00)	(0.00)	(98.00)	(0.0 0)	(0.0 0)	(0.00)	(0.00)	(0.0 0)	(2.00)	(0.00)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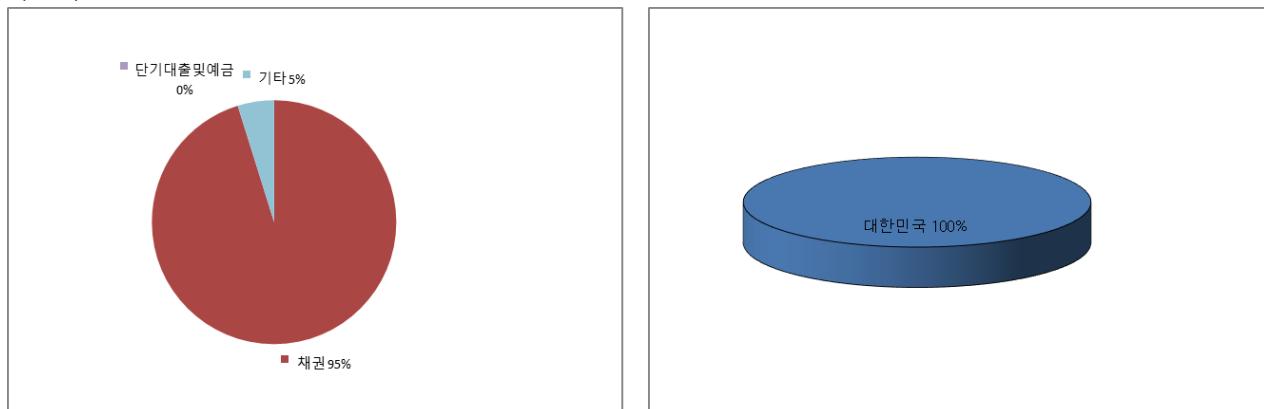
### [흥국멀티플레이증권모투자신탁[채권]]

[ 2021.09.29 현재 / 단위 : 백만원,% ]

통화 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 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등	집합투 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대한 민국	0	381,89 9	0	0	0	0	0	0	0	113	19,20 0	401,212
	(0.00)	(95.19)	(0.00)	(0.00)	(0.0 0)	(0.0 0)	(0.00)	(0.00)	(0.0 0)	(0.03)	(4.79)	(100.00)
합계	0	381,89 9	0	0	0	0	0	0	0	113	19,20 0	401,212
	(0.00)	(95.19)	(0.00)	(0.00)	(0.0 0)	(0.0 0)	(0.00)	(0.00)	(0.0 0)	(0.03)	(4.79)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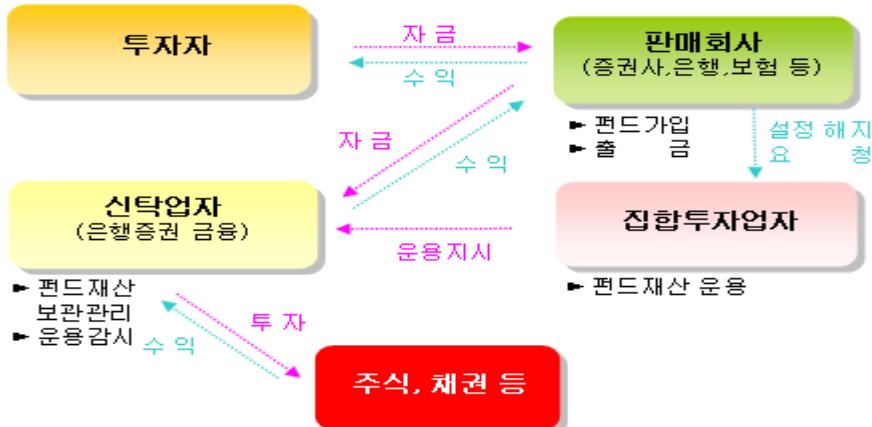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개요

회사명	흥국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흥국생명빌딩 19 층) (연락처 : 02-2122-2800, www.hkfund.co.kr)
회사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08.23 태광에셋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li> <li>- 2000.02.11 투자신탁운용업 허가</li> <li>- 2000.02.16 태광투자신탁운용(주)로 상호변경</li> <li>- 2000.06.19 자산운용업 허가</li> <li>- 2006.03.20 흥국투자신탁운용(주)로 상호변경</li> <li>- 2009.02.04 집합투자업 인가</li> <li>- 2012.06.07 흥국자산운용(주)로 상호변경</li> </ul>
자본금	100 억
주요주주현황	흥국증권(72.0%), 이호진(20.0%), 기타(8%)

#####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 ① 투자신탁의 설정 · 해지
- ②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 운용지시
- ③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④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업무

######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 목	'20.12.31	'19.12.31	항 목	'20.12.31	'19.12.31
유동자산	41,062	42,362	영업수익	25,251	23,886
고정자산	7,999	5,652	영업비용	14,337	13,642
<u>자산총계</u>	<u>49,541</u>	<u>48,014</u>	영업이익	10,914	10,244
유동부채	34,112	3,721	영업외수익	26	73
고정부채	442	628	영업외비용	92	52
<u>부채총계</u>	<u>4,554</u>	<u>4,349</u>	경상이익	10,848	10,265
자본금	10,000	10,000	법인세비용	2447	2,351
이익잉여금	34,988	33,665	당기순이익	8,401	7,914
<u>자본총계</u>	<u>44,988</u>	<u>43,665</u>			

#### 라. 운용자산 규모

(2021.09.30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증권형					단기 금융	파생형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PEF	총 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투자 계약	재간 접형							
수탁 고	5,113	8,335	65,722	-	333	43,055	1,581	4,255	29,984	433	-	158,811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 3. 신탁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증권금융(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연락처 : 02-3770-8880)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 <a href="http://www.ksfc.co.kr">http://www.ksfc.co.kr</a> )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금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2)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 ① 의무

- 수탁회사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에 대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②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 1) 최초설정일부터 2021년 04월 26일까지

회사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 22 층 (연락처 : 02-2180-0400)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 <a href="http://www.shinhanaitas.com">www.shinhanaitas.com</a> )

#### 2) 2021년 04월 27일부터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 층 (연락처 : 02-6714-4600)

####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KIS 채권평가(주)	NICE 피앤아이(주)	(주) 에프앤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 층 (02-399-335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 층 (02-3770-0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 2로 61(마곡동) (02-769-77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참조)	<a href="http://www.koreaap.com">www.koreaap.com</a>	<a href="http://www.bond.co.kr">www.bond.co.kr</a>	<a href="http://www.nicepni.com">www.nicepni.com</a>	<a href="http://www.fnpricing.com">www.fnpricing.com</a>

-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을 합니다.

##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자총회 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어,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함)한 것으로 봅니다.

가.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다.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라.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 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한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 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 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 조제2항에 따른 투자 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나. 잔여재산분배

-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

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②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개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규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자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3) 및 4)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증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 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 투자신탁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자신탁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투자신탁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 투자신탁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 투자신탁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③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법 제247조제5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전자등록기관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1회 이상 공고

##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 · 지점 및 영업소 게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 변경(단,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법 제 87 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 제 7 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증개업자 선정기준:

구분	선정 기준	
증권	지분증권	리서치자료 제공 능력, 투자정보 제공 및 주문집행의 신속·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증개업자를 평가·선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증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채무증권	정보제공 능력, 매매체력의 신속·정확성, 거래보안유지, 결제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증개업자를 평가·선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증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거래와 유사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불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증권(주식, 채권 등)등에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활히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플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리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별치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